영동군 고시 제 2021 - 33호

급경사지 주민대피 관리기준 제정 고시

「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」 제9조에 따라 급경사지 주민대피 관리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.

2021년 4월 5일

영 동 군 수

1. 제정이유

「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」 제9조에 따라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상시계측관리의 결과와 강수량·비탈면의 성상(性狀) 등을 고려하여 주민대피를 위한 관리기준을 제정·운영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목적

나. 법적근거

다. 주민대피 관리기준

○ 주민대피계획 수립개요

○ 비탈면 성상에 따른 붕괴징후 판단기준

- 평상시 붕괴우려 징후

- 비가 오는 중이거나 비가 그친 후 붕괴 징후

○ 주민대피 관리기준

- 준비단계

- 대피단계